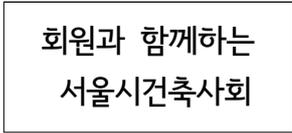




서울특별시건축사회

1965. 10. 23 설립



수신자 회 원

(참 조)

제 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2022.4.29.)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창고시설 중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및 화재 조기진화용 스프링클러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과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도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따로붙임 :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문 1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규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담 당(기안) 김동호 건축팀장 차재엽 사무처장 구철희(병가) 부회장 유준호 회 장 김재록
부회장(공람) 최병훈

협 조 자

시 행 건축 2250 - 502 (2022. 5. 10.) 접 수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서초동), 7층 www.sira.or.kr

전 화 02-581-5715 전 송 02-523-2284 www.facebook.com/siraseoul